

1930년대 김병로의 항일변론의 전개*

한인섭**

목 차

- I. 글머리에
- II. 김병로-이인의 합동법률사무소 시대
- III. 조용하 사건의 변론
- IV. 경성제대 반제동맹사건 변론
- V.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활동에 대한 변론
- VI. 이재유와 공산당재건운동사건 변론
- VII. 사상변호사와 공산주의자의 관계
- VIII. 맺음말

[국문 요약]

본고는 일제하 대표적인 항일변호사로 꼽히는 김병로의 1930년대 변론활동의 전개를 살펴본 것이다. 김병로는 1930년대 초 신간회의 해산, 변호사정직처분 등의 위기를 겪으며, 자신을 재정비하여 1930년대 항일변론을 본격화한다. 이인 변호사와 청진동에서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1941년까지 항일변론을 주도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그가 한 변론으로는 안창호 사건, 조용하 사건,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 박헌영 사건, 이재유 사건, 동우회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안창호 사건, 동우회 사건을 제외하고 김병로의 주요 변론을 살펴보았다. 다만 이 시기에는 보도통제가 강화되어 그 구체적인 변론내용이 직접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추론적 접근을 꾀하였다.

김병로가 이 시기에 한 사건은 주로 ‘사상사건’이고 지도적 공산주의자에 대한 변론이 적지 않았다. 그는 대표적인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로 일컬어졌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다수는, 수사자료, 일제 관헌의 문건, 법정진술 등을 통해 볼 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거기에 공산화로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김병로는 독립민족국가를 쟁취하지는 공통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았고, 자신의 변론은 그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으로 이해했다. 때문에 그는 좌/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가급의 2015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를 막론하고, 동지적 입장에서 변론을 전개했다.

기존의 김병로 연구에서는 김병로의 창동 이사(1930년대 초반) 이후에 변론활동을 덮고 ‘은거’ ‘수절’했다고 정리하고 있으나, 자료와 증언에 입각해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20년대보다 어려워진 여건 하에서도 그의 항일변론활동이 가열차게 전개됨을 확인한 점은 본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김병로, 이인, 조용하, 반제동맹, 박헌영, 이재유, 항일변호사, 사상변호사, 사상사건, 조선공산당

I. 글머리에

1920년대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가들을 열렬하게 변호했던 항일변호사의 선두에 허헌, 김병로, 이인이 있었다. “3인”이라 애칭되기도 한 그들의 변론활동은 1930년에 들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허헌 변호사는 신간회 활동의 일환인 민중대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하였다. 김병로와 이인은 각기 다른 사건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930-32년 사이에 항일변론이 필요한 곳이 가장 많았는데, 일제는 변호사들의 활동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던 것이다.¹⁾

김병로 개인에게도 특히 1931년은 시련의 해였다. 그는 1931. 1. 23.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측(82인) 중 일부가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데 대해 변호사로서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정직 6개월(1931.1.23.-7.22.)에 처해졌다. 또한 1920년대 민족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좌·우 통합의 신간회가 위기에 처했다. 그의 중앙집행위원장 재직 중인 1931.5.15. 신간회 해소를 쟁점으로 한 신간회 전체대회가 열렸다. 김병로는 해소반대를 위해 고군분투²⁾했으나, 그의 의지와 달리 신간회는 해소의 결의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³⁾

1)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허헌 김병로 이인과 항일재판투쟁』, 경인문화사, 2012 참조.

2) 김병로, 「신간회의 해소론이 대두함에 제하야」, 『동광』 제18호, 1931.2.; 김기림, 「해소 가결 전후의 신간회」, 『삼천리』 제16호, 삼천리사, 1931.6. 참조.

3) 한인섭, 앞의 책(2012) 참조.

1930년대에도 그의 변론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주 많았다. 그런데 그는 1930년대 초반에 활동의 중심무대인 경성을 떠나 그 외곽의 경기도 남양주군 노해면 창동리에 이주했다. 오늘날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인데, 당시는 경성에서 떨어진 한적한 시골마을이었다. 그때부터 김병로는 창동에 ‘은거’ 혹은 ‘은인자중’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접었다는 회고를 여러 차례 했으며, 그 회고에 의거하여 1930년대에 김병로는 항일변론의 세계를 떠난 것으로 기존의 김병로 연구들은 언급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는 다른 각종 자료와 증언을 수집해서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본고에서는 밝히고자 한다.

그와 아울러 그가 1930년대에 변론했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1932년의 안창호 변론, 1939-41년의 동우회 사건 변론 정도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필자의 저서에서 나름 상세하게 정리해놓았으므로⁵⁾ 본고에서는 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변호사로서의 활약을 정리하고자 한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김병로는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여러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를 지칭하는 별칭 가운데 “좌경변호사”라는 게 있다. 심지어 “조선제일의 좌경변호사”로 소개되기도 한다. 1920년대에 조선공산당사건을 비롯하여,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사건 변론을 맡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었다. 1930년대에도 그러한 지향은 변함없이 이어진다. 1930년대에 “좌경”이라 함은 무엇인가. 피고인이었던 공산주의자, 좌경 딱지가 붙은 변호사들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그것이 민족독립운동에 있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당시의 사료를 통해 정리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짚어보기로 하겠다.

4) 기존의 김병로 전기는 2권이 나와 있다. 김진배, 『가인 김병로』, 삼하인쇄주식회사, 1983;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 민음사, 1988(김학준의 저서를 인용할 때는 최신판인 2013년판을 인용하기로 한다).

5) 한인섭, 앞의 책(2012), 486-521면(안창호 사건), 559-563면(동우회 사건) 참조.

II. 김병로 - 이인의 합동법률사무소 시대

김병로는 1930년대 중반, 경성의 집을 팔고 외곽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리로 이주했다. 10여 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창동에서 농사짓고 닭치고 하는 생활을 해방 될 때까지 한 것이다. 오늘날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인데, 당시는 경성으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시골마을이었다. 김병로는 창동으로 은거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④ 내가 농촌으로 돌아간 것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익년, 즉 1932년이였다. 그 당시에는 벌써 각 사회단체는 모조리 해산을 당하였고, 우리 변호사협회까지도 그 행동이 불순하다 하여 해산의 운명에 이르렀으며, 또 기왕 말한 형사공동연구회 회원들은 모두 다 사상 관련 사건의 변호권을 박탈당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은 소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걸고, 동아 전역을 침공하여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과,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도 불사한다는 대단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상정할 수 있었고, 그 직후 국제연맹에서 조사된 '리튼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여 국제정세의 추이와 그 결과까지도 추상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 당시 일본 군부의 발호와 참일한 정정으로 보아서 아무리 국제연맹의 힐난이 있다 하여도 만주사변을 중지할 리 만무하고, 그것을 확대할 필연성이 확인되는 바이며, 그 결과로는 제2차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것이니, 우리가 이는 범위의 국제정세로 하여금 일본이 저희 생각으로는 천하무적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지만, 온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必亡乃而라는 것도 능히 알 수 있었으므로, 우리는 日政의 무도한 폭압으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당분간 은인자중하여 국제정세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일본의 패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완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⁶⁾

6) 김병로, 『수상단편』, 김진배, 앞의 책, 300-301면. 『수상단편』은 김병로가 경향신문에 연재한 회고록인데, 그 전문은 김진배, 『가인 김병로』, 231-327면에 수록됨. 이하 『수상단편』은 모두 김진배의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㉑ 해방 전 일본이 대동이를 정복할 야망으로 중일사변 즉 만주사변 북지사변 상해사변을 일으킬 준비공작을 할 즈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나 각 사회단체 어느 것을 막론하고 배일사상을 가졌다고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모조리 탄압을 가해서 정간 폐간 해산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벌써 세계 제2차 대전의 기운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당분간 국내에 있어서는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국제동향을 정관(靜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양주 노해면으로 퇴거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독서로 시간을 보낸 것이 해방까지 13년이란 긴 세월이었습니다.⁷⁾

위의 김병로 자신의 회고에 따를 때는 창동으로 이주한 시점은 1932년이 된다. 그러나 위의 회고에는 여러 사실이 담겨있어 그것만으로는 창동이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㉒에서 언급한 만주사변은 1931년이고, 리튼보고서는 1932년에 나왔다. ㉓에서 언급한 북지사변은 1937년, 상해사변은 1932년이다. 국내적으로 신간회 해산은 1931년 5월이다. 조선변호사협회가 단체 행동을 금지하는 총독의 탄압으로 유아무야가 된 것은 대략 1936년부터이다. 형사공동연구회 회원들이 변호권을 박탈당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는데, 개별적으로 변호사정직 징계 등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1931년이고, 사상범죄에 대한 변호권을 법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1941년에 와서이다. 그러니까, 위의 회고에는 여러 사실이 섞여 있어 어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른 자료 및 증언을 종합해볼 때, 1934년 이전에 창동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창동이주 시점보다 더 따져봐야 할 것은, 창동 이주 이후 김병로가 완전히 “은인자중” 자세로 농사를 지으면서,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수절’했으며, 대신 어떠한 변론활동 내지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기존 연구들이 쉽게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⁸⁾ 그러다 보니, 1930년대 김병로의 주요한 사회활동 및

7) 조선일보 1958. 1. 8. “가인 김병로 웅 爐邊談-독서생활 13년”

8) 김진배(1983)는, 창동 이주 이후에 김병로가 변호사활동을 접었다고 하고 있으며, 김학준(2013)은 안창호 재판, 동우회 사건에의 관여 등 두어 가지 사실을 적시하고 있을 뿐 김진배의 ‘은거설’과 유사한 정리를 하고 있다.

항일변론활동을 빠트리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일반 공직과는 달리 변호사는, 비록 창동에 은거했다고 하더라도 활동 가능한 자유직종이다. 창동은 기차역이 있어서 청량리를 거쳐 서울시내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다.⁹⁾ 불편하기에 여러 번잡한 사무에는 발을 뺄 수 있으면서, 주요한 문제나 사건에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병로는 ‘촉탁강사’의 자격으로 보성전문에서 법률 강의를 맡았다. 창동 이후엔 강좌를 점차 줄여가긴 했어도, 1938년 정도까지는 경성의 보성전문(안암동 소재)에 와서 촉탁강사로서 ‘형사실무’ ‘실무’ 등 과목을 강의했음을 이번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김병로는 서울에서 만날 수 없는 인사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부류의 인사”에 포함된다는 기사도 있다.¹¹⁾

다만 1930년대에 이르면 일제의 압박 때문인지, 일간지에는 재판사건 관련 보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1937년 이후엔 아예 김병로, 이인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일제의 보도지침 같은 것이 있어, 사상사건에 대한 언급이나 항일적 변호사활동을 아예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이다.

청진동의 합동법률사무소 시절에 대하여는, 이인 변호사의 회고가 있다.

① 가인과는 동경유학 시절부터 친숙한 사이인데 1932년부터는 합동사무실을 차려 내가 조선언학회사건으로 피검되기까지 11년간을 주소상종(晝宵相從)한 처지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합동사무실을 지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둘 사이는

9) 일제 말에 창동에서 김병로와 가깝게 살았던 홍명희의 아들 홍기문은 “아침이면 창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 역에서 내려 다시 전차로 조선일보사까지 갔다”가 퇴근했다고 한다. 장덕초, 『일곱 장의 편지』, 우주, 1981, 75면.

10) 『보성전문학교 일람』의 각 연도를 통해 확인했다. 『보성전문학교 일람』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촉탁강사”로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기록은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이고, 1939-42년은 “실무” 담당이되 “휴강중”으로 나온다. 따라서 실제 강의는 1938년까지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機密室(우리 社會의 諸内幕)』, 『삼천리』 제10권 제10호, 삼천리사, 1938.10.1., 13면.

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는 대국적인 견지 이외에 사사로운 금전관계는 따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¹²⁾

② 1941년 10월, 가을 바람이 쌀쌀한 날이었다. 고하(송진우)가 청진동 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내 앞에 책상을 나란히 하고 앉아있던 가인(김병로)이 “그런 말 조심하게” 하니 고하는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누가 아나” 했다.¹³⁾

이인 변호사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피검되어 옥살이를 시작한 것은 1942. 12. 23.이다.¹⁴⁾ 1932년부터 10여 년간 김병로, 이인의 청진동 사무소는 새로운 항일변론의 거점이 되었다. 술탄 민족지사들이 이 사무실을 사랑방처럼 활용하였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김병로와 이인은 한 팀으로 활동했다. 1930년대 김병로의 변호사 활동을 증언하는 자료는 그 밖에도 있다. 가령 고재호의 증언이 있다.

③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1년에 한두 차례 (김병로 선생) 덕으로 인사차 갔고, 청진동을 지날 때는 그가 애산 이인 변호사와 함께 하던 합동법률사무소에 들렀다. 그럴 때마다 가인은 내게 사법관이나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시험에 꼭 합격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다.¹⁵⁾

④ 내가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그 분이 애산 선생과 함께 수입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재판한 일이 있다. 법정에서 두 분은 한복 위에 변호사복을 걸치고 있었다. 재판장은 조진만 부장판사였는데, 개정 벽두에 내가 기록을 재판장에게 드러 맨 먼저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점심시간에 변호사 대기실에 들러 바둑을 두고 계시는 그 분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¹⁶⁾

12) 이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 출판부, 1974, 77면.

13) 이인, 앞의 책, 123면.

14) 한인섭, 앞의 책(2012), 573면.

15) 고재호, 『법조반백년』, 박영사, 1985, 20면.

16) 고재호, 위의 책, 20면.

고재호가 ③에 나오는, 경성제국대학에 다닌 시기는 1932년부터 1937년 3월까지이다. 그때 청진동을 지나면서 청진동 사무실에 들렀다고 한다. 그가 대구지방법원에 판사로 근무한 것은 1941년 10월부터 1945년까지이다. 이 인 변호사와 함께 대구에 갔으므로 ④의 상황은 1941년 10월부터 1942년 12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이 시기에 치안유지법 등 사상범 사건은 맡을 수 없었지만,¹⁷⁾ 민사소송의 변론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김갑수 변호사의 회고이다.

⑤ 내가 가인 선생을 처음 뵈은 것은 공주지방법원에서 판임관 견습으로 서기사 무를 수습하고 있을 때였다. 살인사건의 변론을 하신 것 같다. 원래 정당방위론에는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듯 했는데 그 때도 이 정당방위론을 펴신 것 같다.¹⁸⁾...김병로 선생이 공주로 내려 오셨다. 한인 직원들은 김병로 선생이 오셨다고 법석을 떨었고 일도 쉬고 방청을 가곤 했다. 그때 김병로 선생은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¹⁹⁾

김갑수가 재판소 판임관견습을 한 것은 1935-36년 사이의 일이다. 그때 정당방위 등 정당화 주장에 일가견이 있었다는 것이며, 한국인 직원들이 일도 쉬고 방청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병로가 이 시기에도 왕성하게 변론활동을 했고,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낳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다음은 양희경 변호사의 회고이다.

⑥ 그때 안국동 경기고교 입구에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가인선생과 (김)홍섭, 나 이렇게 셋이서 고생스러우면서도 보람있는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때도 홍섭은 사무실에서 문학서적, 종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나더러도 종교서적을 빌려주어서 읽던 기억이 나요.²⁰⁾

17) 1941년 '사상사건 지정변호사제'가 만들어져, 소위 사상사건에 대해서는 총독부가 지정한 변호사 이외엔 사건 수임을 할 수 없었다. 김병로, 이인은 당연히 지정변호사에서 배제되었다. 한인섭, 앞의 책(2012), 543면 이하 참조.

18) 김갑수, 『법창30년』, 법정출판사, 1970, 159-160면.

19) 김갑수, 위의 책, 30면.

양희경에 따르면, 김홍섭은 안국동에 있는 김병로의 사무실에서 시보생활을 했다. 아마도 이인 변호사의 구속으로 청진동 시대가 마감되고 난 뒤의 일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김병로는 가끔 사무실에 들러 격려했다. 그리고 김홍섭을 보고 그의 친구인 김준연의 딸과 김홍섭의 혼인 증매를 서기도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 말에 이를수록 김병로는 소송사건의 범위를 줄여갔으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김병로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Ⅲ. 조용하 사건의 변론

조용하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북경으로 망명하여 항일활동을 하다가, 1913년에 도미하여 하와이에서 독립활동을 하고 각처의 독립운동을 원조하였다. 특히 상해임시정부와 연계를 맺고, 임시정부의 기관지 ‘韓報’를 하와이 거주 한국인에게 배포하고, 한인협회를 조직하였다. 하와이에서 조선 독립단의 지단장으로 선출되어 기관지 “태평양시사”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친동생인 상해임시정부 외무총장 조소앙(趙素昂)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외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4월 그는 조소앙으로부터 중한동맹회(中韓同盟會) 조직의 선언 및 입회용지의 송달을 받고 하와이 재류 동지를 권유하여 가입시켰으며, 임시정부와 유대를 갖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32년 10월에는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미국 기선 프레지던트 후우버호를 타고 상해로 가던 도중 고베(神戸)에 기항하였다가, 1932. 10. 11. 이 정보를 입수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국제공범상 선객을 체포할 때에는 선장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동의도 없이 선객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하여 상해 미국영사는 일본 외무성을 향하여 항의했다는 소식

20) 최종고, 『사도법관 김홍섭』, 육법사, 1985, 51-52면(최종고가 양희경의 구술을 받은 것은 1975. 1.27.이다).

도 있었다.²¹⁾

조용하는 1933년 1월 경성으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1933. 3. 31.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었고, 다음날 속개된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에 대한 변호는 김병로, 이인이 자진하여 무료 변론을 맡았다.²²⁾ 조용하에 대한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 1929년부터 한국독립당의 기관지 韓報를 송부받아, 하와이의 조선인 사이에 배포하여 그 민족운동을 양양시켰다.
- 1930년 하와이의 조선인 단체인 大韓僑民團, 大韓獨立團, 國民同志會를 한 덩어리로 하여 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위 가정부를 지지 후원하고 이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이탈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韓人協會라는 결사를 조직하여 피고는 그 위원장이 되고 또한 종종 선전 등을 인쇄 반포하여 민족의식의 양양에 노력함으로써 동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 친동생 趙鏞殷(조소양)으로부터 동인 등이 중일사건의 발발을 기회로 하여 上海에서 中韓 양 민족을 결합하여 항일운동을 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이탈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中韓同盟의 선언서 五부, 입회신청서 三통 등의 송부 및 동지 획득의 의뢰를 받고 동년 四月 중순경 호놀룰루시 이오라니 거리의 자택에서 太炳善, 金敬準에 대하여 그 정황을 말하고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 여러 인사들로부터 임시정부에 대한 납부금, 소위 인구세를 징수하여 하와이 은행의 어음으로 上海에 보내어 임시정부의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하였다.²³⁾

21) 동아일보 1932. 11. 4. “海外重要人物 趙鏞殷 被逮 신장동의 업시 잡았다고 米領事抗議提出: 美洲에서 上海航行中 神戶에서 被逮.”

22) 「하와이 趙鏞夏 군자금 모집 사건 공판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23) 「하와이 趙鏞夏 군자금 모집 사건 趙鏞夏 신문조서(제二回)」,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재판장은 “공안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의 공개를 정지하고 일반방청인들을 퇴정시켰다. 1930년대에 이르면, 독립운동가 사건에서 비공개재판이 원칙처럼 운용되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김병로 변호사는 “근친자에 한하여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재판장은 근친자들을 방청하도록 허용했다. 그에 따라 그의 친제와 상해에서 귀국한 조용하의 자녀 등 가족 4-5명이 방청하게 되었다.²⁴⁾

일제는 이 시점에 이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적 색채를 띠지 않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의 범망을 펼치게 된다. 상해에서 한국 독립당이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기관지를 배포하는 것은 “(대일본)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조선을 이탈, 독립” 시키기 위한 결사를 조직한 것이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 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그 기관지 10여부를 하와이에서 받아서 배포한 것 역시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는 게 기소의 요지였다. 일제 법정이라는 불리한 환경 하에서도, 조용하는 자신의 활동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응하였다.

韓報뿐만 아니라 上海 기타로부터 보내어 온 것, 혹은 하와이에서 발행된 것과 함께 회람에 공여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국,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석되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韓報를 회람에 돌린 일이 한국독립당의 목적수행을 위해 활동한 일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법률적으로 보아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할 수 없다.²⁵⁾

“중한동맹에 대하여 피고는 희망을 걸고 있었는가”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일의 성부는 별개로 하고 우리들 조선인으로서의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봉창, 윤봉길 사건에 대하여 “동정을

24) 동아일보 1933. 4. 1.자 일반방청 금지리 조용하 공판개정, 피고 가족에만 방청허락.

25) 『하와이 趙鏞夏 군자금 모집 사건 공판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보내고 지사로서 원조하고 싶은 것 같은 기분이 아닌가”의 질문에 대하여도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조선 2천만 민중의 智力, 경제력을 충실하게 해서 진지하게 쌓아 나가고 실력이 있으면 독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교육 방면에서 전력을 경주해서 조선인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답했다.²⁶⁾ 재판장의 유도성 질문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완곡하게 자신의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신의 힘이 결합하여 신의 명령에 의해 독립을 허락받았을 때에 독립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인의 실력을 충실하게 한 그 날에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으므로 조선인의 진지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독립의 희망은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²⁷⁾

변호인들은 30분에 걸쳐 변론을 했다²⁸⁾고 하는데, 상세한 변론내용은 알 수 없다. 이 인 변호사는 “본건은 어느 것이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무죄변론을 하고, 김병로 변호사는 “집행유예”의 변론을 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조용하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²⁹⁾ 치안유지법 위반이긴 하지만, 하와이에서 이루어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수사 및 공판에서 사려 깊은 태도가 참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용하의 체포과정에서 미국 측의 동의도 없이 체포한 점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피고는 상소를 포기하였다. 상소포기는 여운형, 안창호 등과 마찬가지로의 대응이다.

이 인 변호사는 조용하에 대한 법정태도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26) 『하와이 趙籛夏 군자금 모집 사건 공판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27) 『하와이 趙籛夏 군자금 모집 사건 공판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28) 동아일보 1933. 4. 1.자 일반방정 금지리 조용하 공판개정, 피고 가족에만 방청허락.

29) 『在布哇趙籛夏事件判決』, 『사상월보』 제3권 제2호,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1933.5., 11-13면에 판결문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조용하)는 법정에 선 태도가 장중하면서 겸허하고, 겸허하면서도 숙연하였다. 그의 의연한 자세는 법정에 선 사람의 가식이 아니라 천연 그대로였으므로 그의 기품은 온 법정을 위압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인품은 내가 법정에서 만난 독립지사 중의 으뜸이다. 일본인 재판장은 그에게 “고국에 돌아온 감상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렇게 된 몸이 더 말할 게 있겠소” 였다. 敗軍之長은 不談兵法인데 너희에게 접혀 虜囚의 욕을 보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함이니, 조금도 과장이 없고 눈썹만한 변명도 없다.³⁰⁾

이 인에 따르면, 재판장이 고국에 돌아온 감상을 물은 것은 일본인일망정 조용하의 인물에 감탄해서 형량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속셈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이 인 변호사는, 선고를 앞둔 어느 날 조용하를 면회한 자리에서 “법정에서는 조금 和하게 했으면 싶습니다”고 하였더니, 그는 “내 천성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³¹⁾ 조용하의 법정태도를 보면, 적대적인 감정을 분출함이 없이 의연하게 답할 것은 답하는 태도였으므로, 이것이 무죄변론(이인)과 함께 선처변론(김병로)의 여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의 활동상에 비해 경미한 형을 받은 것은 그의 장중하면서도 겸허한 법정태도에 기인한 바와 무관치 않는 듯도 하다.

조용하는,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뒤, 더 이상 사회적 활동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소식은 1939. 4. 22. 별세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³²⁾

IV. 경성제대 반제동맹사건 변론

1930년대 전반에 학생들의 비밀결사는 ‘독서회’와 ‘반제동맹’으로 대별된다. 독서회가 사회주의 이론학습을 위한 준비단체라면, 반제동맹은 1931년

30) 이인, 앞의 책(1974), 108면.

31) 이인, 앞의 책(1974), 108면.

32) 동아일보 1939. 4. 23.자 趙鑄夏氏 別世[肖].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에 반전운동을 벌인 실천적 조직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³³⁾ 이 시기 학생들의 비밀결사는 대개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는데, 반제동맹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다소간 연관을 맺으며 진행되었다. 일제는 독서회조차도 관용하지 않고 적발, 처벌을 꾀하였는데, 반제동맹의 형태를 띤 경우에는 그 뿌리까지 뽑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의 비밀결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성제국대학 반제동맹이다. 일제가 조선에 만든 최고의 교육기관인 경성제대의 엘리트 청년들이 반제동맹을 결성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경성제대 개교 이래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이 갖춰진 운동이었고, 일본인 학생까지 주역으로 가담한 사건인데다, 만주침략을 전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이기에 세인의 이목을 끌었다.³⁴⁾

1930. 6. 경성제대생으로 독서회를 끌어가던 신현중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던 이종립을 만나, “지금은 독서회에서 이론연구를 할 시기가 아니라 이미 실천의 시대다. 학생간의 공산주의운동은 반제운동이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독서회 수준을 넘어서 반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했다. 1931. 3.에 이르러 반제동맹을 만들고, 거기에 경성제대생은 물론 경성치과의전 등 경성의 주요 학교의 학생들을 동참시켜 반제경성도시학생협의회를 결성했다. 1931. 9.에 가면 노동자들로 ‘적우회’를 조직하여 반제격문을 뿌리기까지 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총독부, 은행, 의원, 신문사 직원까지 망라된 나름대로의 대규모 조직이었다. 그리고 거기엔 조선인 뿐 아니라 일본인까지 가세했기에, 더욱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³⁵⁾

신현중 등에 대한 검거는 1931. 10. 시작되어, 1931. 11. 17. 21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으로 예심에 회부되었다. 예심이 종결된 것은 1932. 8. 16.에 이르러서였다.

33) 홍석률, 『일제하 청년학생운동』, 『한국사 15: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1』, 한국사편집위원회, 1994, 331-332면.

34)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1980, 195면.

35) 김호일, 『한국 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2005, 328-329면.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李鍾林 金와시리 등이 공산당의 최고지도부가 되어 그 아래 학생부문과 산업부문의 조직을 결성하여 학생부문에는 독서회 반제동맹 구원 부를, 산업부문에는 使傭人組合 출판노동조합 행동대를 두고 각 부문에는 조직부 연락부 회계부 선동부 선전부 조사부 등의 부서를 두며 그 위에 서기국을 설치하여 각부를 통제하다. 그리고 「독서회뉴스」 「반제학생신문」 등을 발간하고 각종 팸플렛과 격문을 인쇄 배포하여 노동쟁의 등을 선동하였다는 혐의이다. 동사건으로 공판에 회부된 19명은 다음과 같다.

城大 法科生 愼弦重 同 市川朝彦, 城大 醫科生 曹圭瓊, 城大 法科生 櫻井三良, 同 平野而吉, 同 崔翔奎, 城大 文科生 高晶玉, 齒醫專生 姜若秀, 第二高普生 朴勝珉, 總督府 給仕 車啓榮, 同 李亨遠, 朝鮮日報 給仕 閔泰奎, 天日醫院 給仕 具範植, 靑年學校生 金○範, 同 朴現柱, 印刷職工 李成學, 帝大 法科生 崔基晟 以上 19名³⁶⁾

예심종결되어 기소된 피고인의 명단을 보면 경성제대 법학과(5인), 경성제대 의학부(1인), 문학과(1인), 예과(1인), 경성치의전문 생도(1인), 경성제2고보(3인), 급사(총독부 급사 2인, 조선일보 1인, 동일은행 1인, 천일의원 1인), 기독교청년학교 생도(2인), 한성도서주식회사 직공(1인), 농업(1인)으로 실로 다양했다. 연령은 24세부터 18세까지의 청년들이었다. 이 중 고교생 2명과 예과생 1명은 예심면소처분을 받고, 19인이 공판에 회부되었다.³⁷⁾

반제동맹사건의 제1회 공판은 1932. 11. 4. 경성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었다. 피고들은 신현중 등 수용 중에 있는 11명과 市川朝彦 등 보석중인 8명. 도합 19명이 전부 출정하였다. 그들의 담임변호사 김병로 씨 등 아홉 변호사³⁸⁾도 출석하였다.

방청석은 특별과 보통, 두 좌석을 만들어 특별방청석에는 경성제대 교수 등 20여 명이 열석하고, 보통석에는 피고들의 친족 등 백여 명이 몰려와서

36) 동아일보 1932. 8. 16. 경성제대생을 증심한 공산당계건사건종료.

37) 이충우, 앞의 책(1980), 183면.

38) 조선인 변호사는 5인(최병석, 원택연, 김병로, 이종하, 이인)이고 일인 변호사가 4인(동아일보 1932. 11. 4. 경성제대생을 주제로 학생공산당 공판).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인 변호사를, 일인 학생들은 일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충우, 앞의 책, 193면.

대혼잡을 이루어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吉野 고등계주임 이하 정사복경관 수십 명을 출동시켜 법정내외를 철통같이 경계하였다. 재판장은 치안방해의 이유로 일반방청을 금지하여, 특별방청원 20여 명을 그대로 두고 보통석은 전부 퇴출시켰다.³⁹⁾

이 사건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어났던 것이니만큼 공판정은 매우 긴장되었으며 또 검사가 공소사실 설명과 심리청구까지 방청금지에 부친 것은 사상 공판에 있어서 일찍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⁴⁰⁾

1932. 11. 24. 판결이 내려졌다. 19명 피고인 중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는 단 3명이었고, 16명은 기소유예를 받았다. 실형인 경우에도 신현중(징역3년), 이형원(징역2년), 안복유(징역2년)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관대한 판결로 평가가 내려졌다. 조선공산당사건이라면 중형을 선고하는 게 관례였던 데 비하면 이러한 관대한 판결은 처음이라는 게 중평이었다.⁴¹⁾ 일본인 학생들은 전원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성제대 山田三良 총장이 “모든 것은 본인의 부덕한 소치이니 학생들의 장래를 보아 관대히 처분해 달라”며 요로를 찾아다니던 덕이 컸다⁴²⁾고도 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일본인도 관여했으며, 일제가 만든 최고교육기관에 대한 배려 등이 작용하여 이렇게 관대한 형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V.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활동에 대한 변론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의 주역 중 1인이었던 박헌영은 1927. 9. 첫 공판에서 정신이상의 징후를 일으켜 1927. 11. 22.에야 병보석으로 출감할 수 있었다. 각처에서 치료와 요양에 힘썼지만 회복가능성이 없어 100여명의 피고인

39) 동아일보 1932. 11. 5. “帝大教授等 傍聽 被告 十九名 出廷.”

40) 동아일보 1932. 11. 5. “帝大教授等 傍聽 被告 十九名 出廷 피고들의 가족 친지 쇄도로 혼잡.”

41) 동아일보 1932. 11. 25. “城大共黨 反帝同盟判決 十六名 執猶, 피고 三명에게만 懲役인도 最高刑은 三年懲役.”

42) 이충우, 앞의 책, 193면.

중 그에 대한 공판은 무기 연기되었다.⁴³⁾ 그러다 그와 부인(주세죽)은 1928. 11. 15. 함경도에서, 일제의 일상적 감시와 해안에 대한 엄중한 경비를 돌파하여,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高飛遠走하여 로시아 혹은 중국 방면으로 간 듯한 것이 확실하다”⁴⁴⁾고 했지만,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종적이 묘연했다. 일제의 치밀한 감시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포착되지 않았다. 1934년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박헌영의 잠적

그는 형을 받고 복역 중에 병이 위독하여 가출옥되어 나왔다.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동안 의약에 親하다가 산수 좋은 애인 주세죽 여사의 고향인 함경도 함흥으로 가서 정양하던 중 하루 아침 바람같이 사라졌다. 들리는 풍문에 주여사와 함께 모스꾸바에 갔다 하나 지금쯤 어디 있는지 아모도 아는 이가 없다.⁴⁵⁾

그런데 그 박헌영이 1934. 7. 돌연 나타났다. “상해 법조계에 박헌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경이, 상해 일본 총영사관 경찰부에 수배하여 그를 검거했다는 것이다. 일제는 공산당 혐의로 김형선을 취조한 결과, 그가 해외로부터 잠입할 시에 박헌영에게서 조선공산당 재건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것을 밝혀내고, 김형선으로부터 박헌영이 상해에 소재하고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⁴⁶⁾ 그러나 사실은, 상해 일본영사관은 조선공산당을 해외에서 지도하던 김단야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던 중 한 인물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김단야가 아니라 박헌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⁴⁷⁾ 이때가 1934. 7. 5.로 위의 기사와 달리, 박헌영은 우연히 체포된 것이다.

박헌영은 1933. 7. 초순과 중순에 걸쳐 재상해 일본영사관 경찰부에서 엄

43) 한인섭, 앞의 책, 372면 이하.

44) 조선일보 1928. 11. 15. “조선공산당 박헌영 탈주.”

45) 『出頭巨頭の 其後, 第一・二次 共產黨事件의 首腦者, 民衆運動者大會事件의 首腦者』, 『삼천리』 제 6권 제5호, 삼천리사, 1934.5.1.

46) 조선일보 1933. 8. 8.자 김형선 관계 이의는 박헌영 함구 불인.

47) 임경석, 『이정 박헌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183면.

중 취조를 받았다. 1928년 국의 탈출부터 1934년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 모두가 집중취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박헌영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여 그곳 조선인들로부터 병치료의 도움을 받고, 소학교 교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하얼빈으로 갔다가, 상해로 왔다. 자신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전연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같은 주의자들로부터도 정신병자로 취급받는데 문제가 없었고, 상해로 온 것도 어떤 목적도 없고 별 뜻 없이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헌영으로부터 어떤 물증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가 실제로 한 일, 즉 소련의 모스크바에 가서 국제레닌학교를 졸업하고 명실공히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 조선공산당을 해외에서 지도했던 사업 등을 은폐하는데 성공했다. 만일 그가 한 일을 그대로 진술했더라면, 그 파장은 엄청났을 테지만 이번에도 필사적인 ‘심문투쟁’은 성공했다.⁴⁸⁾

경성으로 압송된 뒤 종로경찰서에서의 취조에서도 박헌영은 이런 일관된 심문투쟁을 이어갔다. “박헌영이 해외에서 활동한 내용은 아무 물적 증거도 없을뿐더러 본인이 그것에 대해 함구불언하므로 (일경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며, 다만 김형선 관계만 진술한다.”⁴⁹⁾ 김형선 관계는, 김형선이 이미 경찰 취조에서 밝힌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된 것은 1933. 8. 26. 예심이 종결된 것은 1934. 3. 29.로 7개월만이였다. 그는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 등으로 공판을 받게 되었다. 1934. 12. 10. 제1회 공판은 박헌영, 김형선 등 7명에 대한 것이었다. 당일 공판정에는 친척들로 대만원을 이루었으며, 공판정 내외에는 서대문서 경관들로 엄중한 경계를 보게 되었다.⁵⁰⁾

그런데 박헌영은 1927년에 연기해둔 재판까지 함께 해야 했던 터라, 박헌영만 분리심리를 받게 되었다. 김형선 등 6인의 재판은 1934. 12. 20. 종료했다. 박헌영의 공판은 1934. 12. 21. 개정되었다. 공판 개정한지 불과 3분 만에 일반의 방청을 금지하고 심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공판의 방청을 허

48) 임경석, 위의 책, 175-176면.

49) 조선일보 1933. 8. 8. “김형선 관계 이외는 박헌영 함구 불언.”

50) 조선중앙일보 1934. 12. 11. “공산당재건 획책한 7명의 공판 개정.”

락받은 사람은 박헌영의 친형 1명 뿐 이었다. 12. 27. 박헌영은 징역 6년(미결통산 550일)을 받았다. 박헌영은 즉석에서 항소할 의사를 표했으나, 1935. 1. 15. 항소를 취하하기로 수속을 마쳤다. 박헌영은 6년 동안 복역 끝에, 1939년 9월에 출옥하였다.⁵¹⁾

이 박헌영 사건의 변론을 맡은 이는 김병로 변호사였다. 김병로로서는, 1927년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공산당사건의 변론을 맡은 이래, 이번으로 박헌영만 두 번째로 변론을 맡게 된 것이다. 1927년에는 20여명의 변호사가 함께 맡았지만, 이때는 김병로 단독으로 박헌영을 맡았다. 그가 자진해서 맡았는지, 박헌영의 의뢰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김병로의 변론 의사와 박헌영의 수락에 의해 이루어졌지 않을까 한다. 박헌영으로서도 김병로 변호사의 결기와 열정을 이미 접한 바 있고, 김병로는 독립운동 옹호라는 차원에서 그의 변론을 자청할 만했던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변론했는가는 기록이 없다. 이 시점에 이르면, 언론에서는 변호사의 변론내용을 거의 소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VI. 이재유와 공산당재건운동사건 변론

이재유는 일제하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생애를 거쳤던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1905년 오지 중의 오지인 함경남도 삼수에서 태어났고, 우여곡절 끝에 1924년에 보성고보에 입학했으나 자퇴하였다. 이듬해 송도고보에 편입했으나 학내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하여 퇴학처분을 받았다. 1926년엔 도일하여 일본에서 노동학교에 등록하고 고려공산청년회에서 활동하다가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3년 6월을 선고받고, 1932. 12. 22. 경성형무소에서 만기출소하였다.

51) 임경석, 앞의 책(2004), 180-181면.

출소 직후부터 그는 경성 지역의 공장과 학교에 세포조직을 만들고, 현장 지도자를 키우고, 기관지(적기)를 간행, 배포하는 등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러시아나 중국의 국제공산주의와의 연결선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공산주의의 기반을 공장과 학교 등 하부층의 현장 내에서 만들어갔다. 그의 노력은 조선공산당재건운동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경찰의 체포노력은 집요하였다. 1934. 1. 22. 서대문경찰서에 행정검속 명목으로 체포되어 취조 중에, 3. 11. 경찰서에서 일단 도주했으나, 인근의 재판소 앞의 미국영사관에 들어간 채 기절했다가 다시 서대문경찰서에 붙들려왔다. 그러나 4. 14. 다시 탈출하여, 이번에는 평소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 및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상세 등'에 대해 깊이 의견교환을 했고 동지애를 나누었던, 경성제대 三宅鹿之助 교수의 동승동 관사에 은신했다. 이재유는 한 달 이상 그 집 마루창을 뜯고 속에 들어가서 거적을 깔고 三宅 교수 부부가 하루 세끼 가져다주는 죽을 받아먹으며 독서하기를 38일이나 하다가 5. 21. 오전에 三宅 교수가 검거되자 탈출해서 행방을 감추었다. 당국이 집중적인 검거노력을 기울인 조선인 혁명가를 일본인 교수가 장기간 은닉시킨 그 자체는 나라 전체를 뒤흔든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다.⁵²⁾

이재유는 도주기간 중에 박진홍, 이관술, 박영출 등에게 '조선내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방법'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에 대해 세밀한 지도를 하고, 공장에서의 운동에 대해서도 세밀한 지도를 하였다. 그에 대한 검거망이 좁혀지자, 서울을 떠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로 은신하여 활동하다가 1936. 12. 25. 창동 제2우이교 부근의 산중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농군, 장돌뱅이, 노동자, 학생 등 여러 가지로 변복”한 수십 명의 사복 경찰의 포위망 속에 잡혀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얻어맞으면서 24시간 동안 일체의 자백 없이 버텨냄으로써, 동료들이 검거망을 벗어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었다.

일제경찰의 입장에서, 이재유의 체포는 “그에 의해 키워지고 있던 반도 공

52) 동아일보 1935. 8. 24. 자 경성제대 연구실 관사가 급변 공산운동의 총본영, 조선공산운동의 初有事, 삼택교수 관사 지하굴에서 은신해 비밀계획, 공산운동 통일, 재건결의 등.

산당운동의 생사를 건 대체포”였다. 30여명의 수사대는 “참혹할 정도로 눈물겨운 개가를 올리면서 개선장수와 같이 수사본부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의 검거소식은 언론에 곧바로 보도되지도 못했다. 후속 수사와 관련자 체포를 위해서였다. 그가 4개월에 걸친 악독한 취조를 받고 기사가 해금되자, 경성일보는 “집요흉악의 조선공산당 마침내 괴멸하다”는 표제 하에 “이로써 조선공산당운동에 의한 모든 화근은 완전히 꺾멸, 종식되었다”고 보도하였다.⁵³⁾ 매일신보는 “조선공산운동 꺾멸의 최후진”이라면서, 그를 일컬어 “마인(魔人)” “적색음모 화신”이라며 “20년 역사 최후 거물” “조선의 사회운동은 이재유의 검거송국으로 드디어 마지막 조종을 울리게 되고 말았다. 이재유 사건의 총검거 송국과 그 취체의 성질 혹은 소위 역사적 사명이란 것이 조선공산당운동의 孤城落日같은 싸늘한 잔광을 자취도 없이 소멸케 하고 마는 것이니...이 일파의 공산당재건운동사건이야말로 조선사회운동사의 최후의 한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삭탈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평했다.⁵⁴⁾

이재유의 몇 년간의 행적은 온갖 신화를 풍성히 낳았다. “루팡 이상 교묘한 변장술로 진후 6차 기록적 탈주” “동원경관만 전조선으로 수만명의 다수” “신출귀몰, 탐정극같은 경로” 등.⁵⁵⁾ 이렇게 그의 일대기, 주변 이야기 모두가 언론의 대서특필 감이었다.

그는 체포의 순간부터 최악의 고문에 시달렸다. 약 4개월 동안 공식 취조만도 14차례나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게 1937. 4. 23.이었다. 검사의 공식수사는 4차례 진행되었다. 1937. 5. 1. 검사의 공식수사가 종결되고 이재유는 예심에 회부되었다. 예심에 들어간 것은 1937. 11.이고 1938. 2. 3회로 예심이 종결되었다. 예심이 종결되면서 집견과 서류접수를 금지하는 조치가 비로소 풀렸다.

제1회 공판은 1938. 6. 24.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체포된 지 18개월

53)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248-249면.

54) 매일신보 1937. 4. 30.자 朝鮮共產運動潰滅의 最後陣 孤壘死守, 地下에 四年.

55) 매일신보 1937. 4. 30.자 朝鮮共產運動潰滅의 最後陣, 學校, 工場에 썩리박은 反帝同盟과 赤色勞組 李載裕企劃浩繁한 赤色網 檢舉만 十七件 人員二五八名.

만에 공판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일제식 표현대로라면 “집요흉악한 공산주의 거물”이자 “적색음모의 화신”인 이재유의 변론을 맡은 이는 김병로와 신태약 두 변호사였다. 김병로로서는, 박헌영에 이어 조선공산당운동의 거물에 대한 재판권을 연이어 맡은 것이다. 검사는 이 시기 사상사건을 도맡아 하던 長崎祐三이었다. 재판장은 荒卷昌之 판사였다.

장기간의 고난과 혹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 이재유는 전혀 굽힘과 위축됨이 없이 당당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진술이 있는 후 사실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재유는 “오래간만에 만난 동료간의 인사를 요구”⁵⁶⁾하였으나, 長崎 검사로부터 반대를 맞았다. 그는 “이재유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심리 중 선동연설을 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소위 법정투쟁을 하여 신성한 법정을 소란케 할 염려가 있으니 금후 이러한 불온한 기색이 보일 때는 일반의 방청을 금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사이의 인사가 없이 사실심리가 진행되었다.

이재유는 “공산운동에 공명케 된 동기와 원인은 무엇인가”는 재판장의 질문에 “1922년 피고가 사숙하던 박기춘이 모 사건의 혐의로 사형을 당하였을 때부터 피고의 가슴에는 00적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가 사상운동에 가담, 공명하게 된 동기와 환경 등의 심리가 끝난 후 재판장으로부터 계속하여 다시 피고가 조선공산당재건을 목표로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주요공장과 농촌 혹은 학교 등에 잠입하여 동지규합 연락과 좌익그룹결성의 실천투쟁을 해온 과정에 대한 세세한 사실심리문답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심리 중 돌연 이재유는 “신성한 법정에 피고를 취조하던 경찰이 방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권의 신성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들의 자유로운 공술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니 그 경찰관의 방청을 금지해 달라”고

56) 매일신보는 이를, “개정법두에 그들의 상투수단인 법정에서 의리론투쟁을 시작하다가”로 쓰고 있다.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동료피고인들과의 인사요청을 “의리론투쟁”이라 칭했던 것이다. 매일신보 1938. 6. 25. “開廷劈頭에 波瀾 李載裕等審理午後에 續行.”

하여 장내가 소란하여졌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다시 오후에 공판을 재개하기로 하였다.⁵⁷⁾

이재유는 속행 벽두부터 “법정의 신성과 피고들의 공술의 자유를 위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취조경관의 퇴장을 요구할 뿐 아니라 계속하여 당일 “병으로 인하여 출정치 못한 피고 서구원의 병상태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장내가 소란해졌다. 검사로부터 피고의 불손한 태도를 감안하여 일반의 방청을 금지하고 심리를 계속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재판장은 일단 모두를 각하하고 사실심리를 계속하였다. 재판장은 피고 이재유에 대한 사실심리의 필요성을 더 느낀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재유의 조선공산당재건을 목표로 한 적색노동조합과 농민조합, 학교내의 좌익그룹 결성과정 등 지하운동의 경과심리를 마쳤다.

이어 피고 고병득의 심리에 들어갔는데, 고병득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재판장의 허락으로 의자에 앉은 채 간단한 사실심리가 있었다. 계속하여 변우식이 공산운동에 공명하여 실천운동을 한 동기와 경과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재판장으로부터 “현재 피고의 공산운동에 대한 심정은 어떠냐” 한즉, 변우식은 “오류임을 깨닫고 이미 청산하였다” 하여 전향을 선언하였다. 그에 대해 이재유는 단지 미소를 띠우고 있었다고 한다. 계속하여 최호극, 양성기, 민태복 등의 심리가 있었던 바 이들은 모두 이미 적색사상을 청산하고 전향하였다고 진술했다.⁵⁸⁾ 이재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이 ‘전향’을 법정에서 할 정도면,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심문받았는지 짐작할 만하다.

제2회 공판은 1938. 7. 5. 오전에 열렸다. 이 날 역시 방청석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첫 공판에서 지병으로 출정하지 못하여 분리심리키로 한 피고 서구원에 대한 사실심리부터 시작되었다. 서구원은 전향을 표방하였다. 이어 長崎 검사로부터 준열한 논고가 있었고, 최고 징역8년부터 1년까지의 구형이 있었다. 이재유에게 징역8년, 변우식, 최구원, 최호극 각각에게 2년 6월, 양성

57) 동아일보 1938. 6. 25. “李載裕事件 遂開廷 取調警官의 退場을 要求하여 場內騷亂 一時休廷.”

58) 동아일보 1938. 6. 25. “地下運動經過를 審問 檢事의 傍聽禁止申立도 卻下 李載裕 以外の 五名은 轉向.”

기, 고병득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민태복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長崎 검사의 논고는 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이 사건은 세인의 주목을 여간 끈 것이 아니다. 그 중에도 피고 이재유가 사회적
으로 미친 바 해독을 말하면 이재유의 관계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542명이고,
그 가운데서 306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는데, 그중에서 기소된 피고가 84명,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자가 95명이고 그 외에는 불기소와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1개인이 미친 해독이 극심하였다...조선공산운동의 역사를 들어 피고의
행동과 사상을 말한 다음, 피고 이재유에게 三宅 교수의 방향 전환서와 박렬의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어서 지나사변에 언급하여 피고와 방청
인에게 일대각성을 촉진한 다음 전기와 같이 구형이 있었다.⁵⁹⁾

다음 변호사의 변론과 피고들의 공술이 진행되었다. 이재유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의 진술이 있었다. 오후 1시 반부터 이재유의 공술을 듣기로 하고 휴
정하였다. 변호사의 변론내용은 언론에 나타나 있지 않다.

마지막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맞아, 일반 방청객이 좌정하였다. 그러나 이
재유의 최후진술은 “안녕질서를 해칠 언동을 할 우려가 있다”가 생각되므로
일반의 공개를 금해달라”는 검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일반 방청인을 퇴정
시킨 가운데 진행되었다.⁶⁰⁾ 이재유의 최후진술은, 공판조서에 그 요지가 실
려 있다.

현재의 사회제도에는 모순이 많다. 전과의 형으로서 복역중 형무소 내에서 확실
한 공산주의 사상을 파악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을 탄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것이 그 일례이다. 우리들 공산주의자가 항
상 주장하고 있듯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일본제국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법률
로 정하는 시기에 이를 것이고 또한 금회의 일지사변 때문에 일본농민의 증견은

59) 매일신보 1938. 7. 6. “李載裕에게 八年役求刑 其他最下로 一年役.”

60) 『공판조서 제2회』, 김정일, 앞의 책(2007), 486-487면.

거의 전부 소집되기 때문에 금후 농촌에 대혼란을 낳게 될 것을 단언하는 바이다. 사변 때문에 일본제국은 모든 산업부문을 통제하고 대사업은 국가를 위한 것이 되어 점차 공산제 사회로 진전하고 있어 장래는 토지도 국유로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이다...내가 출옥후 수백명 사람들과 회합한 것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서로 제휴하여 공산주의운동을 하지는 것을 권유한 것으로 피고인 변우식, 서구원, 최호극 등은 누구도 공산주의자라고 칭할만한 의식수준에 달하지 않으므로 그들과 함께 공산주의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은 운동을 위해 생명을 버릴 결심이고 또 그러한 자가 진실한 공산주의자다.⁶¹⁾

그가 여기까지 진술했을 때 재판부는 폐정을 선언하였다. 이재유는 극히 일부만을 진술했다는 항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폐정을 통해 그의 최후진술의 충분한 기회를 봉쇄해버렸다. 이재유는 이로써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3일후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최종진술의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어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찰조서는 고문의 위조가 많았고, 검사의 조서는 검사가 경찰서에 출장하여 경관과 합동으로 고문하면서 작성한 것이고, 예심조서는 渡邊 판사의 때에 경찰조서를 그대로 낭독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小林 판사에 회부하여 거의 그대로 종결된 것. 또 금회의 공판 중 사실신문은 너무나 지나치게 간단하게 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한 경찰적 여론과 그에 의한 관변의 여론이 피고인 사건의 내용과 너무나도 천양지차로 다른 까닭에 피고인의 자백적인 최종진술에 의해 피고인 사건의 정체를 명백히 진술하기를 바라는 바임.⁶²⁾

수사과정과 예심과정에서의 불법과 문제를 폭로하고, 오도된 언론에 대한 교정을 하는 장으로 최후진술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재판부의 봉쇄로

61) 김경일, 앞의 책(2007), 487면.

62) 1938. 7. 8. 이재유 작성, 경성지방법원 앞. 김경일, 앞의 책(2007), 487-488면에서 재인용.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청원에 이어 그는 다음날,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사실 심문하는데 구체적 심문을 기피하고 계획적으로 추상 화함으로써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견 진술을 일일이 억압, 중지시킨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 질문에 재판장은 방청인이 있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고 답하고 피고인을 위해서는 방청을 금지해도 좋다고 (이재유가) 말하자, 재판장은 자신이 묻는 바에 예, 아니오로 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일체를 중지시킨 사실.

재판장이 피고인 사건의 취조고문 주임경관인 경기도 경찰부 사찰계 高村 주임을 특별석에 착석시켜 피고인의 심문에 입회시킴으로써 피고인을 위협하고 피고인의 공술을 불리하게 한 것. 또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9조에 의해 그를 퇴정시켜줄 것을 청원하여도 매일 입회시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고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입한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사실.

재판장이 검사의 구형에 대한 피고인의 법률적 반박변론을 현장에서 반박하고, 검사를 대신하여 검사 구형 연수의 정당성을 변호하면서 다음의 합의적 결의에 의한 언도(선고)가 필요없는 것처럼 언동한 것. 검사가 8년을 구형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7년 이하로 규정된 법률 이상의 부당한 구형이라고 변론 반박하자, 재판장은 “전과가 있으므로 지당하다”고 현장에서 반박하고 사법권의 독립성과 재판의 합의성을 무시한 사실.

피고인이 최종진술한 때 재판장은 예심정, 검사국, 경찰서의 취조법 및 고문, 기타 추태의 폭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언론을 억압하고 피고인과 서로 대립하여 부분적인 논쟁을 거는 것에 의하여 피고인을 흥분시키고 또 재판장 자신도 감정화한 사실. 동시에 피고인이 최종진술이 상당한 장시간을 요한다고 신립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변론을 계획적으로 정체화시켜 답다고 하는 이유로 무리하게 폐정시킨 사실.⁶³⁾

63) 1938. 7. 9. 이재유 작성. 경성지방법원 앞. 김경일, 앞의 책, 488-489면.

〈청원서〉와 〈기피신립서〉를 보면, 이재유는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조문의 인용까지 해가면서 말이다. 이는 이재유 자신이 명민한 데다 이전에 재판경험이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인 법적 자기변론을 펼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들은, 너무나 법률적인 항변이고, 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이재유 자신이 직접 그 내용의 구상을 다듬었다고 보기보다는, 변호사의 작품이라 봄이 더 합당할 것이다. 이재유가 썼다면, 자신의 사상과 공산주의의 정당성, 동료에 대한 감정 등을 포함시키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위 문건에는 그런 내용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오직 형사절차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비법적 요소를 걸러내고, 오직 법절차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법률가적 전문성의 발현이다. 또한 그 법적 쟁점에 대한 언급은, 1927~28년에 정점에 달했던 조선공산당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다채로운 소송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 역량은, 당시 재판에서 주역이었던 김병로 변호사를 능가할 인사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위의 문건은 아마도 김병로의 최종변론의 내용과도 합치되었을 것이며, 문건의 작성 및 내용에 있어 김병로가 직접 작성했거나 김병로와 협의를 거쳐 이재유가 작성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재판부는 위의 청원서 및 기피신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모두 불출석시킨 가운데, “재판장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조 규정을 위반하고 또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구두로써 그 이유의 요지를 고해 판결을 선고했다.⁶⁴⁾

이재유는 징역 6년에 미결구류 150일의 판결을 언도받았다.⁶⁵⁾ 이재유는

64) 공판조서 제3회(1938.7.12. 경성지방법원). 김경일, 앞의 책, 490면.

65) 전향자로 된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변우식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동아일보 1938. 7. 13. “李載裕 六年言渡 轉向者 五名은 執行猶豫”). 전향자에 대한 파격적인 집행유예와 이재유의 형을 대비시킨으로써, 전향의 유도에 힘쓰려 한 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매일신보는 “구형보다 모두 관대”라고 그 의미를 짚고 있다. 매일신보 1938. 7. 13. “이재유에 6년역 언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였다가, 14시간 만에 상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이란 무대를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 같으나 이렇게 상소를 취하한 것은, 김경일의 지적대로 “강압과 폭력에 의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는 결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그는 옥중에서도 전향하지 않고 가열찬 옥중투쟁을 벌여나갔다. 끝까지 전향하지 않았기에, 그는 형기 만료 후에는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⁶⁷⁾에 따라 청구보호교도소에 수용 중, 그만 1944. 10. 26. 40세의 나이로 옥사하고 말았다.⁶⁸⁾

Ⅶ. 사상변호사와 공산주의자의 관계

김병로는 192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건에서도 적극 관여했다. 1930년대 들어 박헌영에 이어 이재유까지 변론함으로써, 혁혁한 공산주의자(일제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명높고 영향력 있는 공산주의 지도자)의 변론을 도맡아 한 셈이다.

경성제대 반제동맹사건은 국내 및 일본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박헌영은 해외에서, 이재유는 지하운동 과정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친지나 후원자가 나타나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김병로는 아마도, 다른 독립운동 사건에서 그러했듯이, 이 변론을 자원해서 무료변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박헌영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이재유의 경우 청구서, 기피신청서를 통해 볼 때, 대단히 치밀한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은 흔적이 역력하다.

오늘날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법하다. 김병로는 “공산주의 지도자”를 무슨 마음으로 변론했을까 하는 것이다. 김병로는 이들의 변

구형보다 모다 관대.”

66) 김경일, 앞의 책(2007), 252면.

67)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시행 1941.3.10.] [조선총독부제령 제8호, 1941.2.12., 제정]

68) 김경일, 앞의 책(2007), 252면.

론을 공산주의자에 대한 변론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변론에 임했을까.

1. 우선 기록이 상세한 이재유의 수사, 재판기록을 통해, 이재유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검사: 조선독립을 희망한 것은 조선 적화의 수단으로 독립하려고 생각한 것인가?

피의자(이재유): 처음에는 단지 민족의식에서 조선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을 받고 나온 뒤 공산주의자가 된 후 조선독립과 공산제도의 실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출옥(1932. 12. 22.) 후 조선독립 및 공산화를 목적으로 운동한 것인가?

피의자: 우선 조선독립이 근본문제라고 생각해 그 취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⁶⁹⁾

검사: 피의자의 근본사상은?

피의자(이재유): 나의 근본사상은 조선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검사: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조선 독립은 무슨 까닭으로 필요한가?

피의자: 내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함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조선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고 또 설령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해도 일본적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⁷⁰⁾

이재유는 조선의 독립이 그 자체로도 필요하고, 공산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도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 조선독립 없이 공산주의가 달성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본적 공산주의국가’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그러한 진술이 치안유지법 위반 등 명백히 불리한 상황에서의 진술이란 점에서 그 진술에 확고한 신뢰를 더할 수 있다. 일제하 공산주의자의 대다수는 식민지하의 민족적 차별에서 출발했으며, 그

69) 이재유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937. 4. 24. 김경일, 앞의 책, 370면 수록.

70) 이재유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1937. 5. 1. 김경일, 앞의 책, 401면 수록.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사상이 내재하고 있었다.⁷¹⁾ 물론 이재유와 같은 견결한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로 인정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그 방법으로 식민지하의 노동자, 농민, 학생에 대한 헌신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내부의 파쟁과 시행착오는 엄청났지만, 희생을 각오한 헌신성은 다른 집단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면을 갖추고도 있었다.

일제는 이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해서 뿐 아니라, 식민지체제유지에 가장 위협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꼽아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하였고, 그 조직과 사상을 괴멸시키려고 전력을 다했다. 이재유의 체포와 조직과 해에 대해 일제가 그토록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이재유에 이르면 민족적 혁명의 관점을 확실히 녹여내려고 했던 점이 두드러진다.⁷²⁾ 그렇기 때문에, 이재유의 행적이 남북한 양쪽에서 모두 헌창되는 것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⁷³⁾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유사한 취지에서 이해된다.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의 학생 주역인 신현중의 다음 회고를 보자.

71) 김정일, 앞의 책, 293면.

72) 김정일, 앞의 책, 294-295면.

73)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좌익배격의 분위기 속에서 일제하 사회주의계열의 훈장 수여에 주저해왔다. 그 사이에 복환은 이미 이재유에게 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61주년(2006년) 광복절을 맞아 민주·노령 지역의 무장투쟁가 박영(1887-1927) 선생을 비롯해 평남 강서에서 3.1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고지형(1859-1927) 선생,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이재유(1905-1944)선생, 여성 독립운동가로 최고령 생존자인 이효정(93)선생 등 313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상했다. 포상되는 독립유공자의 훈격은 건국훈장 145명(독립장 3, 애국장 43, 애족장 99), 건국포장 47명, 대통령 표창 121명 등이다. 이 광복절 포상자 313명 중 232명은 정부에서 자료를 찾아 포상하게 되었다. 이재유는 “국내항일” 운동으로, “건국훈장 독립장” 훈격의 포상을 받았다. 그의 공적개요는 다음과 같다. “1925年 開城 사립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중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했다가 퇴학 처분을 당한 후 同年 渡日하여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日警에 체포되어 懲役 3年 6月(未決 500日 通算)을 받고 1932年 12月 출옥한 후, 1933年 7月 朝鮮共產黨再建 경성트로이카를 결성하여 활동하다 1934年 1月 日警에게 체포되었으나 同年 4月 탈옥하였으며 1936年 6月 조선의 절대독립, 일본제국주의타도 등을 목적으로 朝鮮共產黨 京城地方協議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1936年 12月 日警에 체포되어 懲役 6年(未決 150日 通算)을 받고 1942年 9月 刑期가 만료되었으나 출옥하지 못하고 1944年 10月 옥중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됨.”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admNum=951238;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159984> 2015.2.20. 최종방문)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부르짖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되지도 않았다. 그때는 약소민족을 돕고 식민지 해방을 밀어줄 수 있는 나라는 소련 뿐이었다고 믿었다. 공산주의운동이 곧 민족해방운동과 일치했던 것이다. “당시의 민족운동가들은 대개 같은 생각이었지만 나의 학생때 경우에도 조선독립과 광복을 찾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접했고 그들을 이용했을 뿐이다.”⁷⁴⁾

2. 다음 일제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자. 일제는, 1930년대에는 치안유지법의 적용대상(사상범은 대개 이 범주에 든다)에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이외에, 조선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지향하는 자들도 포함시켰다. 일제의 영토의 일부를 떼어내어 독립시키려는 것은 일제의 국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관례가 확립되면서부터이다. 그에 따라, 일제의 탄압자료에서는 민족주의적 독립운동가와, 민족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한 자의 두 부류로 나누곤 했는데, 다음의 자료는 그 경향 및 분포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다.⁷⁵⁾

조선에서의 사상범과 (일본) 내지에서의 사상범과의 사이에는 그 범죄동기에 있어 큰 相違가 있는 듯하다. (일본)내지에서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에 걸린 자는 거지반 없으나, 조선에서는 민족주의 사상에 의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자가 상당히 많다.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이 가장 왕성한 것은 1928년경부터 1932년까지이었고, 그 뒤 1933년경부터 1937년말까지의 사이에도 상당한 수효에 달하였다.

작년(1938년) 4월 총독부 법무국 발표에 의하면 사상범 수형자가 1937년 중 全鮮 형무소에 入獄한 치안유지법 위반이 247명, 그 중에 조선민족주의사상이 동기가 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된 자가 41명이며, 또 민족주의 사상을 抱懷한 데서 다시 공산주의 사상에 달해 마찬가지로 치안유지법 위반에 걸린 자가 104명

74)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179-180면.

75) 『민족주의와 사상범』이라는 제하에 “경성지방법원 검사였으며 현 경성보호관찰소장인 堤良明氏가 최근 이러한 一文을 발표하였기 역재한다.”는 소개와 함께 실린 글이다. 『삼천리』 제11권 제1호, 삼천리사, 1939.1.

에 달한다.

다시 그 이전부터 형무소에 복역 중인 자로서 1937년 말에 全鮮 각 형무소에 在한 治維法 受刑者 658명 중

1. 단순히 치안유지법 위반 154명
2. 민족주의 사상을 抱懷하였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간 자가 323명

이상과 같이 조선에서의 사상범의 대부분은 민족주의 사상이 주요한 동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조선에 있어서는 이 민족주의 사상을 제거하면 사상범의 대부분은 소멸할 모양인데...원컨대 조선민족주의사상을 抱懷한 諸氏여! 또는 민족주의사상이 기초된 공산주의사상을 抱懷한 諸氏여- 속히 그 민족적 편견과 공산주의사상을 청산하고 총량한 황국신민이 되어 南(次郎)총독각하의 소위 내선 일체의 실적을 올리고 이 비상사국 극복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이 자료는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37년을 기준으로, 당시 형무소에 치안유지법 수형자가 658명에 달하며, 이들은 민족운동가(단순 치안유지법 위반)와 공산사상가(민족주의 → 공산주의사상에 달한 자)로 나뉘어진다. 그 중 전자보다 후자가 2배 이상 많이 투옥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유형의 사상범은 민족주의사상을 주요동기로 함에 공통된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사상가도 민족주의사상을 제거하면 그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 좌우를 막론하고, 조선독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사상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3. 김병로, 이인 등 대표적인 항일변호사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이들 공산주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기회를 가진 인물들이었다. 조직과 활동, 사상에서 비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개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의 사상을 숙지하고 행적을 공감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변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 공산주의자들이 김병로, 이인을 가까이 자신들의 변호사로 맞이하였던 것도 그 변호사들과의 소통이 가능했고 유용했다고 판단했기 때

문일 것이다.

당시의 언론이 이들 항일변호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게 있다.

[김병로] 군은 금일까지에 맡아본 사건이 약 5,6백건에 달하는데, 그 7,8할은 사상사건이 점령하였다....김군은 사회운동 관계로 단상에 선 일이 많은 까닭에 법정에서 서서 변론을 하는 때에도 조금만 흥분이 되면 단상의 웅변식으로 흘러 상을 두드리며 연설하듯 하는 태도를 가지는 때가 드물지 아니하다....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키에 두 볼 이 훌쩍 빠진 김군, 그는 조선 좌경변호사로 첫 사람이 될 것이다.⁷⁶⁾

[이 인] 이군이 오늘까지 맡아본 사건은 600여건인데 8할은 사상사건이다. 공산당사건의 피고로 이군의 얼굴을 법정에서 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것이다. 소장변호사로 또는 좌경변호사로 사회운동이 죄가 아니 된다고 열렬히 주장한 이는 이군일 것이다.⁷⁷⁾

[이창휘] 조선의 사상변호사로 일 존재를 굳게 점령하고 있는 이로는 이창휘 군을 망각할 수 없다. 몸이 뚱뚱하고 눈이 둥그렇고 굵다란 목소리로 법정에서 검사와 불이 날 듯이 논전을 바꾸는 이는 이창휘 군이다. 1925년에 동경서 변호사시험에 파쓰를 하고 개업한 이래 전후 담당한 사건은 약 800건 가량인데 이것의 6할은 사상사건이다.⁷⁸⁾

김병로, 이인은 “사상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하다가피 하였던 것이고, 그 사상사건의 대다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운동이었던 만큼 이들에게는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의 별칭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러한 평가에

76) 동허자, 「변호사 평판기(1)」, 『동광』 제31호, 동광사, 1932.3., 66면.

77) 동허자, 앞의 글, 66-67면.

78) 동허자, 「변호사 평판기(2)」, 『동광』 제33호, 동광사, 1932.5., 62면.

따른 부담과 고난도 겪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에 개의치 않고 사상사건의 변론이 금지되는 1941년까지, 사상사건의 변론을 기꺼이 맡았다. 따라서 반제 동맹이든, 박헌영이든, 이재유든, 이들이 검거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면 이들도 변호사로서 김병로, 이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이다. 좌경운동가에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는 한 파트너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물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상과 활동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그런 ‘주의자’라고 간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변호하는 자이지, 의뢰인과 동업자이거나 사상공유자로서까지 말할 수는 없다.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로서까지 지칭된 정황에 대하여 이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결국 내가 변론하는 취지는 좌익사건이나 민족운동사건이나 그 취지가 같다. 내가 적극 변론하고 나섬은 일제탄압에 시달리는 같은 동포를 구하자 함이요, 민족 독립운동을 옹호하자 함이지, 공산주의운동을 돕자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좌익운동을 표방하지를 않았다. 앞에 내세우기는 민족해방이니, 그 뒷 속에서 탄 생각을 품은 경우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 물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더구나 ‘코민테른’의 지시가 있었던 탓으로 그들은 민족진영과 한 때나마 보조를 함께 했다.

이런 관계는 앞서 말한 간도폭동사건에서도 그러하다. 간도폭동 사건에서는 그곳의 우리 동포들이 국내와 연락하는데 일부 좌익과 선이 달고 있었던 모양이나 본질적으로는 민족운동사건이었던 게 분명하다.

아무튼 민족운동이 앞서는 만큼 이들 사건을 맡긴 했는데 이런 관계는 당시에 흔히 들을 수 있었던 경부선의 비유로 설명이 된다. 우리가 경부선을 타고 가는데 부산까지를 1천리로 잡고, 대구까지가 7백리라면 우리는 대구 가는 승객이요, 공산주의자들은 부산까지 가겠다는 승객과 같다. 기차를 같이 탔으니 그들과 동행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목적지를 같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비유는 내가 갑자기 만들어 낸 것이 아니요 당시에 드문드문 쓰던 말이나,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면 “부산까지 가지 말고 대구에서 함께 내리세” 하는 말을 곧잘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네, 그렇시다” 하곤 했다. 이 말은 민족주의로 전향하라는 뜻인데, 전향이란 말이 자주 쓰이던 시절의 이야기다.⁷⁹⁾

‘경부선의 비유’는 그 시대 독립운동의 흐름과 일치하는 매우 탁월한 비유로 생각된다. 앞의 이재유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독립의 대의에 일치하되, 그를 위한 방법론이 달랐을 뿐이다.⁸⁰⁾ 독립 이후의 국가의 모습에 대한 상은 물론 다르지만, 사상과 주의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동(浮動)하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씩 물이 들어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반영일 것이다. 1910년대에 민족자결주의나 미, 영에의 의존도가 있었다면, 1920년대에는 식민지독립에 대해 우호적 손길을 뻗치는 유일한 강국인 소련과 그 표방이념인 공산주의에의 다소간 경사는 거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시대적 조류였던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인 변호사의 배경 설명은 또한 분단체제가 공고화된 뒤에, 다소 우익적으로 착색하여 식민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점에서의 일부 변형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김병로가 자신의 일제하 활동에 대해 회고하는 것은 대개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인데, 그때의 반공지상주의 분위기에서는 일제하의 공산주의자의 변론에 정열을 쏟은 대표적인 변호사였다는 점을 적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48년 분단된 채로 남북한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상쟁-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을 맡은 김병로에게 기사가 남북과 관련된 각종 질문을 제기했을 때, 김병로는 자신의 정신과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79) 이인, 앞의 책(1974), 106-107면.

80) 또 다른 비유로 조소앙의 글을 소개할 수 있다. “양 당(독립당과 공산당)의 결승점이 독립전쟁에 있으니, 先入關中이 곧 결승점 아닌가. 독립당원이며, 정면의 적이 일본이다. 공산당원이며, 정면의 적이 어찌 독립당이라 하나. 흑하사변의 전비를 뒤흔 용단이 無하냐. 아, 사색지방열보다 據義聯黨해야 할 독립이니 할 공산이니 합도 비교적 진보된 사상이라 하여, 독립전쟁의 양대 무기로 보아 양당이—공조협진을 양명한다. 전도의 승리는 경성에 先入할 자에 귀하리니, 독립당이나 공산군이 나 건국영웅이 何黨에 더 돌출할가 眼을 拭하고 待한다.”(조소앙, 『독립당과 공산당의 전도』, 독립신문, 1922. 5. 6.자; 인용하,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한국학보』 104호, 일지사, 2001, 18면에서 재인용) 여기서 “선입관중”은 항우와 유방 중 진나라 수도인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천하를 다스릴 패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여 경성에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앞날의 승리가 있을 것이니, 서로간의 파쟁이나 갈등보다는 독립운동의 대의에 공조협진하려는 것이 조소앙의 주장이다.

하고 있음이 특히 주목을 끈다.

예전 변호사 시절이나 신간회 시대에 법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일본관헌들과 싸울 적에 공산주의자를 늘 변호하였고 암묵리에 그네들과 공동전선을 펴서 日관헌에 대항하여 왔지요. 그때의 우리 목계가, 우리는 조선사람 독자의 ‘민족국가’를 만들려 함에 있었지요. ‘민족국가!’ 주권을 찾아 우리 손에 쥐고, 아무 他力에 침범 받은 바 없는 민족국가를 만든 뒤에, 3천만의 민의를 물어서 사회제도나 경제제도를 점진적이요 비혁명적인 합법적 방법으로 개혁하여 나가자 함이 나의 목표였지요. 오늘도 이 신념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신념 밑에서 이 의자(대법원장)에 앉았고 또 일을 해 나갑니다.

이제 내외의 여러 가지 착잡한 관련으로 국토가 두 쪽에 갈라졌다 하나 역사적으로 보나 혈통, 문화, 관습 무엇으로 보나 한 덩어리였던 것이요, 장차 한 덩어리로 지향하고 있는 터이니 남북 사이에 ‘적이요 동무요’가 애당초부터 없을 바라고 봅니다. 언젠가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한데 뭉쳐 우선 주권을 완전히 찾아내자’ 하는 데에 기조를 두고 남북의 모든 정치가와 그 국민이 나갈 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일 없이 동포간에 상쟁이 없이 조속히 통일되어 그 빛나는 민족국가를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하겠어요.⁸¹⁾

주권을 찾아 “조선사람 독자의 민족국가”를 만들자. 일본관헌에 대항하여 그런 목표를 위해 공동전선을 펴자. 일제하에서 김병로는, 이런 관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법정에서나 사회에서 “늘 변호”하였다는 것이다. 김병로가 박헌영, 이재유 등 지도적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하고 변호했을 때, 그는 독립민족국가를 추구하는 항일 애국자로서의 공감대를 갖고, 최대한의 열정을 갖고 임했음은 틀림없다. ‘조선 제일의 좌경변호사’라는 별칭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81) 김병로, 『회견기: 반민법 실시와 대법원측 구상, 신법전의 발표와 기타에 대하여』, 『삼천리』 제6호, 삼천리사, 1948.10.1.

VIII. 맺음말

본고는 일제하 대표적인 항일변론사로 꼽히는 김병로의 1930년대 변론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기왕의 김병로 전기 및 연구에서는, 김병로가 1930년대 초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창동으로 이사하면서, 변론활동 및 사회활동을 접고 ‘은거’생활로 들어갔다고 쓰고 있으나, 이는 당시의 자료 및 증언과 전혀 맞지 않다. 1930년대 내내, 김병로는 은거생활이 아니라 항일지사들의 변론에 정열을 쏟았으며,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도 감당했다.

김병로의 항일변론은, 1930년대에는 안창호, 조용하, 경성제대 반제동맹, 박헌영, 이재유, 동우회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 즉 조용하, 반제동맹, 박헌영, 이재유에 대한 김병로의 변론을 가능한 상세히 접근하고자 하였다. 다만 그 시점에는 보도통제가 강화되고 법정의 비공개화 방침에 따라 변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에, 추론을 통한 접근이 불가피했다.

1930년대 김병로의 변론사건 중 상당수는 공산주의를 표방한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의 변론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으므로 김병로와 이인 등에게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의 별칭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당시의 공산주의를 표방한 인사들의 운동은 수사, 재판자료를 통해서 보거나, 일제 관헌의 사찰문건을 통해 보거나,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기초를 깔고 거기에 공산화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민족독립이 없는 공산주의는 무의미하다는 이재유의 진술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인 변호사는 ‘경부선의 비유’를 통해, 김병로 변호사는 민족국가, 주권을 찾자는 공통목표를 갖고 공동전선을 펴기 위해 그들을 변호사로서 늘 변호하였다고 한다. 최종의 목표점은 다를 수 있지만, 항일 및 독립의 대의를 추구하는 공동전선의 동지로 이해했던 것이다.

김병로는 변론활동을 통해 조선 공산당의 지도적 인물들에 대해 일찍부터, 가장 가깝게 알 수 있었던 민족진영의 인사였다. 수사와 재판이란 힘든 과정에서 만난 변호인은 그 의뢰인에 대해 보다 속속들이 알게 된다. 또한 그는

일제하에서는 신간회 운동을 통해, 미군정하에서는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분열이 아니라 민족통합에 힘을 쏟았다. 김병로는 정치적으로 우익으로 분류되지만, 좌익 측 인사들과 소통을 틀 수 있던 드문 지도자였다. 다시 말해 좌익과 소통가능한 진보적 우파 지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정국하의 분열상 속에서도 좌익 측에서조차 김병로를 그만큼 인정한 것은, 김병로가 일제하에서 가열찬 변론을 통해 좌익계 인사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1930년대 말에 이르러 김병로는 이인과 함께, 민족주의 계열의 중요한 부분인 동우회 사건의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일제하 김병로의 변론은 좌/우에 따른 어떤 편가름이나 편향이 없었음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 고재호, 『법조반백년』, 박영사, 1985.
- 김갑수, 『법창30년』, 법정출판사, 1970.
-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푸른역사, 2007.
- 김진배, 『가인 김병로』, 삼하인쇄주식회사, 1983.
-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 민음사, 1988.
- _____, 『가인 김병로 평전: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 민음사, 2013.
- 김호일, 『한국 근대 학생운동사』, 선인, 2005.
- 신용하, 『조소앙의 사회사상과 삼균주의』, 『한국학보』 104호, 일지사, 2001.
- 이인,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 출판부, 1974.
-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 임경석, 『이정 박현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 장덕조, 『일곱장의 편지』, 우주, 1981.
- 최종고, 『사도법관 김홍섭』, 육법사, 1985.
-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허헌 김병로 이인과 항일재판투쟁』, 경인문화사, 2012.
- 홍석률, 『일제하 청년학생운동』, 『한국사 15: 민족해방운동의 전개 1』, 한국사편집위원회, 1994.

○당시 사료

- 『하와이 趙鏞夏 군자금 모집 사건 공판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 『하와이 趙鏞夏 군자금 모집 사건 趙鏞夏 신문조서(제二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42권 獨立軍資金募集 11』, 국사편찬위원회, 1986.
- 동허자, 『번호사 평판기(1)』, 『동광』 제31호, 동광사, 1932.3.
- 동허자, 『번호사 평판기(1)』, 『동광』 제33호, 동광사, 1932.5.
- 在布哇趙鏞夏事件判決, 『사상일보』 제3권 제2호,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1933.5., 11-13면.
- 『出頭巨頭의 其後, 第一・二次 共產黨事件의 首腦者, 民衆運動者大會事件의 首腦者』, 『삼천리』 제6권 제5호, 삼천리사, 1934.5.1.
- 『機密室(우리 社會의 諸內幕)』, 『삼천리』 제10권 제10호, 삼천리사, 1938.10.1., 13-23면.
- 『민족주의와 사상법』, 『삼천리』 제11권 제1호, 삼천리사, 1939.1.
- 김기림, 『해소 가결 전후의 신간회』, 『삼천리』 제16호, 삼천리사, 1931.6.
- 김병로, 『신간회의 해소론이 대두함에 제하야』, 『동광』 제18호, 1931.2.
- 김병로, 『회견기: 반민법 실시와 대법원측 구상, 신법전의 발포와 기타에 대하야』, 『삼천리』 제6호, 삼천리사, 1948.10.1.
- 『보성전문학교 일람』,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1942년.

○신문자료

- 조선일보 1928. 11. 15.자.
- 동아일보 1932. 8. 16.자.
- 동아일보 1932. 11. 4.자.
- 동아일보 1932. 11. 4.자.
- 동아일보 1932. 11. 5.자.
- 동아일보 1932. 11. 25.자.
- 동아일보 1933. 4. 1.자.
- 조선일보 1933. 8. 8.자.
- 조선중앙일보 1934. 12. 11.자.
- 동아일보 1935. 8. 24.자.
- 매일신보 1937. 4. 30.자.
- 매일신보 1938. 6. 25.자.
- 동아일보 1938. 6. 25.자.
- 매일신보 1938. 7. 6.자.
- 동아일보 1938. 7. 13.자.
- 매일신보 1938. 7. 13.자.
- 동아일보 1939. 4. 23.자.
- 조선일보 1958. 1. 8.자.

〈Abstract〉

Lawyer Kim Pyong Ro, his Defense Lawyering for Anti-Colonial Patriots in 1930s

In Sup Han*

Kim Pyong Ro [1887-1964] was the first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 has enthusiastically defended the Korean patriots who were accused by Japanese Colon for their anti-Japanese movement under the colonial period especially in 1920s. This paper demonstrates his legal practice against Japanese domination in the entire 1930s, which is under evaluated.

In the 1930s, most of his cases were related to “the communist organizers”. Often, he was called as a “left-wing lawyer” or an “ideological lawyer”. He did not distinguish the simple nationalist anti-colonial case from the communist-tended case when he selected his own case. As many socialist/communist leaders stated at the court, it was unimaginable to step forward any communist agenda under the colonial iron-rule. Although he was not a communist, he advocated the communist organizers in the colonial era. Communist movement at that time was closely related to Korean liberation anti-colonial movement. His advocacy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every kind of anti-Japanese movement should be/could be integrated into one goal-the Independence of Korea. Kim Pyong Ro and his colleague “left-wing

*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yers” have arduously advocated communist leaders in the 1930s. Anti-Japanese law practice of Kim Pyong Ro in the 1930s has been undervalued compared to one in the 1920s.

This paper shows that Kim has been consistently involved in the law practice from 1921 to 1941.

[Key Words] Kim Pyong Ro, Lee In, Anti-Imperial League, thought lawyer, thought control, Colonial Period